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02

발의연월일: 2025. 1. 14.

발 의 자:이재관·송재봉·장종태

이병진 • 박지원 • 허성무

양부남 • 박지혜 • 전진숙

박해철 • 정진욱 • 김종민

강준현 · 김문수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.

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전문직·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모두 소상공인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 및 자산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적절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.

또한,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고용 확대를 기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상시 근로자 수 확인에도 많은 행정적 비용 이 소모되고 있어,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범위 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소상공인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 편,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더 작은 소상공인인 영세소상공 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 및 제22조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"을 "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제3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영세소상공인 대책) 정부는 영세소상공인(소상공인 중 업종 별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)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상공인의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자는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보지 아니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소상 제2조(정의) ① -----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 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-----업종별 평균매출액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 에 해당하는----. <삭 제> 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일 것 <삭 제>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22조의2(영세소상공인 대책) 정 <신 설> 부는 영세소상공인(소상공인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자 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)에 대하여 그 경영 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